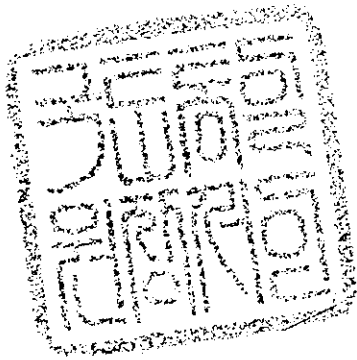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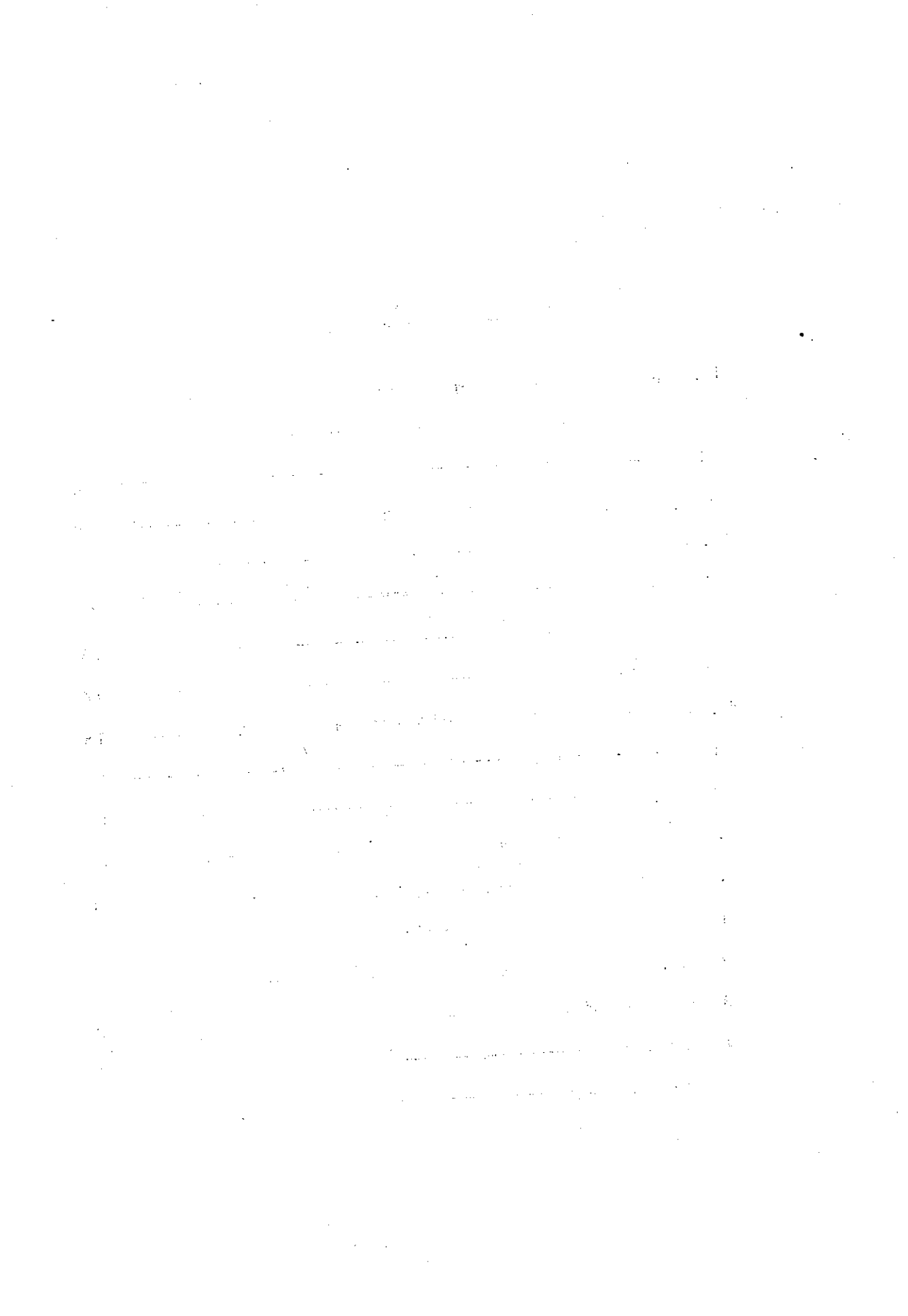


수복지 통일조성 외교방안



차 례

1 . 일반이론과 모형의 정립	1
2 . 한국통일에 관한 가상적상황의 설정	6
(1) 평화통일의 경우	6
(2) 북괴도발에 응전한 무력통일의 경우	8
3 . 무력통일시의 분계점	12
(1) 정치적측면	12
(2) 법적측면	13
(3) 군사·외교적 측면	16
4 . 북한수복시에 예상되는 한반도주변정세와 국제적반향	18
(1) 마·일·쏘·중공	18
(2) 기타제국	18
5 . 한국통일의 외교적 명분	18
6 . 수복시에 요망되는 통일외교조치	21
(1) 대 UN	21
(2) 대자유우방	23
(3) 대 중립주의국가군	23
(4) 대공산권	24
7 . 분헌적 참고자료	25



1. 일반이론과 모형의 정립

주어진 주제는 「수복시의 통일조성 외교방안」 다시말해서 「북한수복시의 통일외교조치에 관한 연구」이다. 이는 무력통일 즉 군사적 수단에 의한 통일, 전쟁을 통한 통일을 대전제로 하고 대한민국이 북한을 수복하여 군정을 실시하고 일정한 단계와 절차를 거친 끝에 명실공히 통일을 완수한다는 가정위에서 연구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에 접근함에 있어서는 전쟁수행 외교와 통일외교라는 두측면을 상호관련성속에 일원적으로 파악하여 예상되는 국내외상황과 반응, 전쟁과 통일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제기되는 제문제점과 그 해결책, 여기에 있어 요망되는 외교적명분과 조치등에 관해 기술할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분야는 전인미답의 학문적 처너지이고 그러한 학문적 작업은 대단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상적전제하의 방안수립이라는 것은 그 동기 와 의도가 주부꺼리가 된다는 점에서 그 처리에 기밀과 신중을 요함은 여 말할 것도 없다. 주제에 관한 실질적, 핵심적 논술에 앞서 「전쟁수행외교와 통일외교」라는 2쪽 1의 논제에 관한 일반이론이랄까 일반모형이랄까 하는 것을 구태여 설정해 보기로 한다.

먼저 전쟁지도외교에 있어서는 다음 제유형을 생각할수 있다.

A. 기본적 입장에서 볼때

① 능동형

당사국이 계획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도발하는

경우

② 피동형

당사국은 평화를 수호하나 상대방이 전쟁을 도발해 왔으므로 해서 자위상 이에 응전하여 침략자를 격퇴하거나 이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는 경우

B. 교전상황에서 볼때

① 단독대결형

당사국간의 1대1의 교전으로 전쟁이 수행·종결되는 경우.

② 다변적배후지원하의 대결형

교전당사국의 배후에서 수개의 국가가 간접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전쟁이 진행되는 경우.

③ 국가군간대결형

동맹 또는 진영간의 내결과 같이 교전쌍방이 복수국가들로 구성된 가운데 전쟁이 진행되는 경우.

C. 시기적단계에서 볼때

① 전쟁전

전쟁을 도발하려는 나라는 일면 전쟁준비를 해나가면서 또한 면으로는 평화를 위장하는 외교수법을 쓰며 피침략대상국으로 예정된 나라는 전쟁억지에 주력함과 동시에 피침시의 응전을 위한 군사 및 외교태세를 내막적으로 갖춘다.

② 전쟁중

전쟁도발국은 능전쟁을 억지로라도 정당화시키고 이를 승리로 이끌어 가려고 군사 및 외교활동을 전개해 나가며 피침국은 상대

방의 침략행위를 규탄하고 자위를 위한 응전행위에 대해 국제적 지원을 얻고 일단 피동적으로나마 전쟁에 돌입한 이상 이를 승리로 끝맺고자 군사·외교활동을 전개한다.

③ 전쟁종결시 및 그 이후

전승예정국은 가장 유리한 조건하에 종전하고 승리의 소득을 극대화하여 강화회의 또는 국제회의에서 외교노력에 최선을 다한다. 한편 패전예정국측은 패전은 하나마 늘 불리한 조건하에 종전하고 패전의 피해를 극소화시키기 위해 외교노력을 경주한다.

다음 통일외교의 제유형으로는 다음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A. 수단면에서 볼때

① 평화적 수단

단독협상 또는 관계제국을 포함한 국제회의에서의 협상과 같은 순수한 평화적수단만으로 통일을 시도하는 경우의 외교유형

② 군사적 수단

계릴라전, 폭동, 내란 등 폭력수단에서 정규전까지를 포함한 각종 군사적 수단을 발동하여 정복 또는 전복으로 통일을 달성하려는 경우의 외교유형

③ 혼합적 수단

평화적 수단과 군사적수단을 혼합사용하면서 화전양락의 허실성을 보일 경우의 외교유형

B. 대상 및 부대면에서 볼때

① 국내

분단상태하에 서로 통일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경합하고 있는

당사측 쌍방

(2) 국외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국가와 직접, 간접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외부세력 또는 국제기관. 예컨대 국제연합제기관, 국제회의의 각진영별 국가 등이 그것이다.

○. 외교노력이 시기적 단계에서 볼때

ㄱ. 평화적 수단외 경우

- ① 어느 일방에서 자기측 제안을 제시하는 단계
- ② 쌍방에서 어느 방안에 합의를 보고 조정하는 단계
- ③ 채택된 방안을 실천하는 단계
- ④ 국제적 보장을 받는 단계

ㄴ. 군사적 수단외 경우

- ① 자기측의 군사적수단을 통한 통일접근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단계
- ② 전승으로 패자에게 자기통일방안을 강제하거나 무조건 흡수하는 단계
- ③ 무력통일의 결과를 보전하는 단계

이상을 통정하여 「전쟁수행 및 통일을 위한 외교의 모형」을 세워보면 아래와 같다.

A. 입 장	B. 상 황	C. 단 계	D. 무 대	외교노력의 E. 시기적단계
① 전쟁도발측 ② 피침측	① 단독대결 ② 다변배후지원 하의단독대결 ③ 국가군간의대 결	① 전쟁전 ② 전쟁중 ③ 전쟁종결시 및 그이후	① 국내 ② 국외	① 사전선전 ② 전승자의 등 일방안집행 ③ 통일결과보전
(본 논고에서 가상의 대한민국에 해당되는 경우)				
②	①-②	①-②-③	①-②	②-③

2. 한국통일에 관한 가상적상황의 설정

(1) 평화통일의 경우

대한민국은 1947년 11월 14일에 채택된 한국 통일문제에 관한 UN결의에 의거하여 48년 5월 8일 UN한국임시위원단감시하 38선 이남에서 실시된 총선거의 결과 농년 8월 15일 정부수립을 보고 농년 12월 제3차 UN총회결의에 의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서 정식으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그후 북괴의 부력남침이 격퇴되고 「제네바」회담에서의 한국통일논의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그 이래로 대한민국은 일관해서 UN의 통한결의를 준수하여 UN감시하의 남북한총선거라는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국토통일을 달성할 것을 추구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북괴는 한국통일문제를 다룰 UN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기를 계속 거부하면서 무력공산화 통일의 기본전략을 고수해 오고 있다.

북괴의 이러한 경직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통일전략에 있어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는 전진적 외교자세를 취하고 있다. 금 70년 8월 15일 광복 25주년을 마지하여 박정희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입장에서 「평화통일기초조성에 관한 구상」을 정식으로 내외에 천명하였던 것이다. 평화통일에 관한 8·15선언의 핵심적 내용은 국토통일이 민족의 지상명령이라 할지라도 전쟁을 피하여 평화적으로 달성되어야 하며 평화적방법에 의한 통일에는 반드시 긴장상태의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위에서 다음 세가지 점을 집약적으로 강조하였다.

(1) 북괴가 전쟁도발행위와 폭력에 의한 대한민국전복기도를 완전

히 포기할 것을 선언·실증하고 이것이 UN에 의해 확인될 경우에 인도적견지에서 남북간에 가로 놓인 인위적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수 있는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는것.

(2) 북괴가 한국의 민주·통일·독립과 평화를 위한 UN의 노력을 인정하고 UN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한다면 UN에서의 한국문제토의에 북괴가 참석하는 것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것.

(3) 북괴에게 전쟁준비대신 남북간의 선의의 경쟁 즉 민주체제와 공산독재 체제간의 우열을 판가름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적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것.

박대통령의 이러한 평화통일구상은 강한 「평화의 사상」과 「남북한의 전민족적이익」을 추구하고려는 동기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요점은 북괴의 무력도발포기로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간에 평화적인 경쟁을 진행시키면서 단계적으로 남북간의 장벽을 제거하고 UN의 권위, 권능아래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을 성취한다는데 있다. 그리고 이는 전쟁을 부정하고 평화공존과 협상의 시대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세계사의 조류에 순응하고 새 지역질서를 모색하고 있는 아시아국제관계의 내일을 내다보는 선구적 착상이며 종래의 반공쇄국 체제로 부터 승공개방체제로 국가적태세를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는 점에 그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통일구상이 실현될 수 있느냐 여부는 북괴측이 지금까지의 호전적 태도를 지양하고 UN통한방식을 수락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현금까지의 북괴측반응에 비추어 아직은 그 가능성이 희박

하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으로는 이러한 경류성능은 평화통일구상을 견지해 가면서 국내적차원과 국제적차원과의 양차원에 걸쳐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가능케 할 제반환경상황과 여건을 조성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70년대중엽을 바라보면서 모든 부문에서 북괴보다 우월된 국력을 배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2) 북괴도발에 응전한 무력통일의 경우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대한민국으로서는 평화통일구상을 견지하고 있어 대한민국측에서 먼저 군사적수단에 호응하여 무력통일을 시도할 가능성은 없고 또한 이를 시도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이에 대하여 긍정적반응을 보이고 평화통일을 위해 서로 협조할 것이 필수요건이 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의 상황은 그와 정반대이다. 한반도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와 세력균형상황은 매우 착잡한데다가 북괴의 거동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북괴-조선-중공간의 북방 3각동맹의 동향을 보면 조선의 팽창주의적의도는 아시아지역에서 가시지 않고 있고 중공은 여전히 세계공산혁명전략을 고수하는 가운데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북괴는 70년대초를 「결정적시기」로 설정하여 대한민국내에서 「혁명적대사변」을 일으키려고 즉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면적 무력침공을 감행하여 공산화통일을 달성하고자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이미 대한민국에 대해 각종 도발행위를 가해 오고 있다. 게다가 북괴는 금 70년 4월에 중공과 재밀착하여 아시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한국을 공산화통일할 것을 공동으로

선언하였다. 또한 「닉슨·독트린」의 한국적용에서 오는 한국방위의 한국화와 주한미군감축은 북괴로 하여금 미국의 한국방위의지가 감퇴하고 한국방위에 허점이 생긴듯이 오인케 하여 오산에서 제2의 한국전쟁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북괴는 평화통일구상에 관한 대통령의 8·15 선언을 당기관지인 「노동신문」 8월 22일부 사실을 통해 거부하고 「통일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것」이며 「북녘을 혁명기지로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금 70년의 제 25차 UN 총회에서도 이에 보낸 비망록 가운데서 종전의 태도를 조금도 완화시키지 않고 한국통일문제를 다룰 UN의 권위, 권능을 부인하며 남북한무조건동시초청, UN 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해체, UN군철수등을 계속 주장하였다.

이상의 제징조에 비추어 북괴가 UN 통한 방식에 평화적으로 순응해 줄 가능성은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희박하며 오히려 그들의 계획대로 무력통일방식을 실천에 옮길 공산이 있다.

북괴가 오산에 의해 대한민국에 전쟁을 도발해올 시기로서는 그들이 「결정적시기」라고 불리는 70년대초가 가장 위험시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1971년 5~6월이후 아니면 김일성이 환갑을 마치는 1972년이 전쟁도발가능시기로 예상된다. 만약에 이 시기가 아무일이 없이 넘어간다면 세월이 지날수록 대한민국의 종합적국력이 북괴보다 우월해 나가고 따라서 북괴가 대한민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가망이 줄어들 것이므로 여간해서 전쟁을 도발하기가 어렵게 될것

이나 1976년의 대한민국대통령선거전후의 정치적격변기를 전쟁도발의 최후의 기회로 삼을런지도 모른다.

여태까지 대한민국은 전쟁억제에 주안점을 둔 방어적, 소극적입장에서 외교적,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데 일관해 왔지만 일단 북괴측의 도발로 전쟁이 발생하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침략행위에 대처하여 응전하게 된 이상은 수세로 부터 공세로 전이하여 적극적으로 외교적, 군사적조치를 취하여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 승전의 결과로서 통일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이 전쟁을 통일전쟁으로 승화시켜 이 기회에 국토통일이라는 민족적 성업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전쟁을 여하히 승리로 이끌고 통일을 달성하느냐는 구체적 전략전술과 외교방략은 이 전쟁이 어떠한 양태를 취할 것이냐에 달려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정규전의 경우와 비정규전의 경우 또는 그 혼합형태의 경우, 재래식제한전쟁의 경우와 핵무기까지 사용하는 전면전쟁의 경우, 공산측에서 중공이나 소련이 가입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겠다. 그런데 대체의 경향으로 미루어 보아서 북괴가 전쟁을 도발할 경우는 대한민국내에서 계렬라전을 격화시킴과 동시에 외부로 부터의 기습 등으로 재래식제한정규전을 일으킬 것이며 중공이나 소련으로 부터 간접지원을 받는 가운데 대한민국과의 단독군사대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의 군사력이 백중지세에 있기때문에 6·25 동란때와 같이 급격한 전선의 상호이동은 생각되지 않고 상당기간 동안 벽찬 대치상태가 지속될지도 모른다. 본논고에서는 대한민국이 ① 자유우

방제국의 배후지원만 받는 가운데 북괴와 단독으로 군사대결하는 경우와 (2) UN 및 자유우방제국의 직접개입아래 공동으로 북괴 또는 북괴+이북 지원하는 공산국가와 군사대결하는 경우와의 두가지 경우를 상정하였으며 대한민국군 또는 대한민국군+연합군이 마침내 북한으로 진격하여 서서히 북한영토전체를 수복하고 북한괴뢰정권이 북한외의 나라 예컨대 중공이나 소련으로 망명하므로써 전쟁이 개전 2년만에 강화회의없이 완결되며 그후 대한민국주도하에 UN통한결의를 실천에 옮기므로써 동일을 완수한다는 가정하에 이에 수반하는 여러가지 외교조치를 생각해 보았다. 동의외조치를 항목별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북괴의 전쟁도발사실을 전세계에 폭로하고 대한민국이 정당자위상 이에 응전하지 않을수 없었던 사연을 중외에 밝힘으로써 국제여론을 대한민국편으로 유도한다.

(2) 한미방위조약·한국분계 UN결의·참전 16개국선언, 마닐라선언 등에 의거하여 미국 및 기타 자유우방제국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외교적, 군사적으로 직접 지원하도록 유도한다.

(3) 전쟁을 승리로 이끌은 후 UN감시하 남북총선거에 관한 UN통한결의의 실시를 촉진하도록 UN 및 관계회원국을 움직이며 동일한국의 독립과 안전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도록 관계열강을 움직인다.

3. 무력통일시의 분계절

(1) 정치적측면

대한민국은 북괴가 전쟁을 도발해 왔을 때까지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조건으로서 북괴에 우월하는 국력의 배양을 강조해 왔고 이를 위해 정치적안정, 자유체제하의 경제발전, 국방력의 증강, 공산주의총력전태세에 대처할 국민역량총동원태세의 강화, 자신감에 입각한 범국민적 통일운동의 추진에 힘써 왔다. 그리고 안보면에서는 자주국방을 주로 하고 공동방위를 종으로 하는 종합적안보태세를 정치외교력, 국내치안력, 경제력, 과학력등 국력제원과의 상관하에 강화하려고 노력해 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방위목적과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민족주의와 국가이익, 애국심과 충성심의 실감, 자기역활에 대한 사명감, 정치적영도력 등을 기간으로 방위의지를 형성, 강화해 왔다. 둘째로 미군과의 연합체제하에서나마 자주방위에 관한 독자적인 계획과 실력을 전략구상, 병력, 병기, 장비 및 개력면에서 갖추려고 노력해 왔다. 셋째로 자주국방의 이념아래 공동방위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미국, 일본, 월남참전국 아스파회원국 한국전쟁 참전 16개국등과 외교절충을 벌려 왔다. 넷째로 국민의 국방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분별적저해요소를 청산하고 구심적단결요소를 제고시키기에 노력해 왔다.

이제 북괴의 전쟁도발로 본의아니나마 전쟁상태에 돌입한 이상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통일성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평화통일을 추진하고 자주국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해오던 모든 시책을 전쟁완수 및 통일달성에 초점을 둔 시책으로 전화시키고

전시체제하에 국력을 총동원하기에 최대의 정치지도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는 6·25 동란때의 공산주의자들의 만행, 그 후의 공산주의자들의 파괴행위에 나타난 비인도성을 들어 국민의 반공적개심을 높이고 자유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자유·평화·번영에의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현재의 자유민주주의생활양식과 체제를 수호하고 평화파괴자를 응징하여야 한다는 결의를 높임으로써 자발적전투력을 극대 화시킬 것이 간요하다.

그리고 북한 수복지구의 북한동포에 대하여는 공산주의의 허위성과 취약성을 깨우쳐 주고 대한민국의 따뜻한 정치적, 법적보호밑에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과 인도성을 실감하여 마음속으로 부터 이에 귀의해 오도록 교도하여야 한다.

(2) 법적측면

한국통일에 관한 법적문제의 내용은 주로 통일의 법적근거와 통일방법의 법적한계의 문제로 집약된다. 실제에 있어 한국통일은 안으로 민족적염원으로 추구되어온 국가의 지상과업인 동시에 그것은 또한 국제연합이 달성해야할 주요한 과제의 하나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통일문제는 한면에 있어서 국내문제인 동시에 다른 면에 있어서 국제문제이기도 한 이면성을 갖고 있다.

한국통일에 관한 UN총회의 제결의내용은 「통일·독립·민주한국을 수립하려는 국제연합의 기본목적에 따라 UN은 한국의 평화적통일에 관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권한하에 한국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한국인구를 비례대표할수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할 자유선거를 UN감시하에 실시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원칙적으로 실질적

사항에 관한 UN 총회의 결의는 권고적효력을 갖는데 그치는 것이지만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거듭 동결의의 수락 및 존중을 명시해 왔으므로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따라서 대한민국은 그 결의내용에 따라야 할 국제법적의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런데 또한편에 있어 이러한 UN 결의는 「대한민국헌법절차에 의거한 UN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로 규정되는 일이 있다. 법적으로 따지면 UN 결의에 따른 UN감시하의 남북한총선거는 대한민국과 북괴집단을 동일한 차원에 두고 총선거에 의하여 양자의 정치권력을 통합·일원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반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에 의거한 남북한총선거」는 현행법질서아래에서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실효성있게 북한지역에 까지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통일의 개념은 아니며 이상 양방안은 서로 저촉되는 내용의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제5조)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인 휴전선이북에서도 타당성을 가짐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부칙 제8조는 「국토수복후의 국회의원의 수는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므로써 실시수복후의 국회의원의 정수는 헌법 제36조2항의 「150인 이상 200인 이하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그러한 경우에 특히 헌법개정을 행하지 않고 법률(선거법)의 개정만으로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법체제아래서는 한국의 통일은 대한민국헌법질서아래

서와 실질회복이라는 형식으로써만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헌법에 의거하지 아니한 일체의 통일방안은 바로 헌법위반을 구성하는 것이며 또한 관계법규(반공법·국가보안법·형법등)에 저촉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이나 관계법규들 각기의 개정절차에 따라 개정치 않는한 「UN 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통한 통일은 국내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편 무력통일문제에 관해서 불매 한나라의 정통정부가 그 영역내의 반란단체를 무력적 수단에 의하여 진압·해산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국가의 헌법적 자치권능에 속하는 국내사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성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는데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휴전선은 국제협정(단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되어 있지는 않다)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경계선이며 또한 한국에 있어서의 무력충돌은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위협·파괴하는 것으로서 한국농란시 집단행동을 취하였던 바와 같이 UN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이며 한국문제의 평화적해결에 관한 UN의 현장상의 권능을 인정하고 또한 UN의 평화적통한 원칙을 수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무력적방법으로 북괴집단을 진압하는 것은 국제협정 및 UN의 제결의와 저촉되는 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므로 통한에 관한 UN의 제결의를 존중 및 수락하는 한 이 양자의 모순적관계를 법적으로 조화할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UN결의의 규범적우위를 인정하고 그것에 따라 관계 국내법규의 조절 즉 개정을 피하거나 아니면 법이론적으로 양자의 모순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헌법질서와 저촉되지 않는 내용

의 새로운 결의가 채택되도록 UN 외교를 전개할 것이 필요하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유일합법성을 인정한 UN 총회 1948년 12월 12일의 결의(195호B)를 강조·원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3) 군사·외교적 측면

「제네바」 회담의 좌절후 한국문제가 환원된 국제연합은 1954년의 제9차총회이래 오늘날까지 일관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의 동한 결의로 채택해 왔는데 그중에는 「평화적수단에 의하여 대의정체하여 통일·독립·민주한국을 건설하고 동지역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완전히 회복한다」는 구절이 들어 있다. 또한 1954년 6월 15일 제네바 회담에서의 한국문제토의총결에 제해 행한 한국문제에 관한 16개국 선언은 이들의 공동노력의 밑바침이 되어온 기본원칙의 하나가 「국제연합은 그 현장에 의거하여 침략을 격퇴하며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집약적행동을 취하고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앞선할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고 있음을 천명한바 있다. 이러한 제결의와 선언이 현재까지 공산측의 전쟁도발을 방지하는 억제적 기능을 수행해온 것이 사실이나 이제 북괴의 도발로 제2의 한국전쟁이 발생한 마당에 있어서 이들의 결의나 선언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동되어 6·25 동란때와 같이 UN군이 편성되어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려 올것이라고 안이하게 기대할 수는 없으며 새 사태에 임해서 새로운 UN 결의를 채택하도록 외교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결의나 선언은 선언적효과는 있어도 관계국의 군사지원을 의무화한 법적효과는 없으며 또한 긴장완화를 지향하

는 국제공토에 비추어 새로운 보편적, 지역적 집단안보조치의 발흥에는 강력한 새 원동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밖에 집단안보노력에 있어서는 월남참전연합국이나 아스파 회원국들과의 지원을 모색하기 위한 외교활동도 필요하다.

또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운명공동체적 연대의식하에 혈맹관계를 맺어온 미국의 적극적개입과 강력한 군사지원이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방위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주축으로 한 한미군사력의 복합적총화였다. 최근에 「닉슨·독트린」에 따라 한국방위의 한국화가 진행되자 대한민국내에는 그 대책으로서 자주국방태세를 강화함과 아울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즉각 자동개입방식」으로 그의 군사의무조항을 강화하며 또한 일방적 폐기통고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어 왔다. 이제 북괴가 전쟁을 도발해온 마당에 있어서 농조약의 억제기능은 끝난 것이며 동조약의 군사의무조항에 따라 미국이 행능하기 보다는 동조약의 정신에 따라 그리고 대한민국측의 새로운 지원요청에 따라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을 군사지원해줄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1954년 11월 17일 한미 양국간에 서명된 「한국에 대한 군비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의하면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UN군사령부가 이땅의 방위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이 사령부권한하에 두게 되어 있는데 북괴의 전쟁도발앞에 한국군이 단독으로 응전하느냐 또는 UN군이 개태형태로나 새로운 형태로 개차기능을 발휘하느냐 여부에 따라 내용적인 조정을 가할 것이 필요해질 것이다.

4. 북한수복시에 예상되는 한반도주변정세와 국제적반향(생략)

5. 한국통일의 외교적명분

(1) 역사적 측면

한민족은 4천년의 역사과정을 통하여 공통의 언어·풍속·관습·문화 및 생활양식속에 융합·발전되어온 단일민족이며 아주 짧은 기간동안 외국통치하에 있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평화를 애호하는 독립국가로서 존속해 왔다. 그리고 2차대전종말에 국토가 분단된 것은 우리의 민족의사와는 아무 관계없는 한반도주변열강의 이해관계에서 오는 타율적조치에 의한 것이니 이같이 아무런 역사적필연성이 없는 국토분단은 어떤 의미에서도 정당화될수 없고 오히려 관계열강은 한국분단에 도의적책임을 느끼고 한국통일을 가능케 하도록 국제적환경조건을 조성하는데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2) 개인적, 인도적 측면

한국국민이 결코 바라지 않았던 타의에 의한 인위적 분단으로 말미암아 한민족은 가족·친척·지기들이 남북으로 이산되어 서로 아무런 소식도 모르는채 정신적쓰라림을 강요당하고 있는데 동족간에 재회·재결합되기를 열망하는 것은 인류상 당연한 욕구이며 또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견지에서라도 부인할수 없는 권리이다. 그리고 자유의 천지에서 생을 향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는 북한공산독재의 비인도적 억압하에 신음하고 있는 선량한 북한동포를 구출해야할 사명이 있다.

(3) 국가적 측면

현재의 분단상태는 국가적존립과 국가적번영·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요인이 되고 있으며 남북이 통일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에 있어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 촉진하고 우리민족 모두가 행복하게 풍요하게 그리고 평화스럽게 살수 있다.

(4) 국제적 측면(외교적 명분)

① 한민족이 독립된 통일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알타」, 협정, 「포쓰담」 협정 국제협정에 의하여 공인된지 오래고 또한 민족자결권을 존중하는 것은 전후의 국제조류로서 일반화되고 있다.

② 국제연합은 통일된 독립·민주한국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누차 결의해 왔고 또한 48년의 제3차 UN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는 대한민국정부를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바 있다.

③ 한국이 아직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통일문제를 다물 국제연합의 권위·권능을 부인하고 있는 북괴가 UN감시하의 남북한총선거를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그뿐더러 무력공산화통일을 기본전략으로삼아온 북괴는 그간 전쟁준비에 광분해 오더니 드디어 대한민국에 대하여 무력침공을 가해 제2의 한국전쟁을 야기하였다. 이는 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하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행위이며 또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가져오는 범죄행위이다. 한국전쟁때도 국제연합헌장의 정신과 목적에 따라 채택된 국제연합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 의거하여 국제연합군이 공산침략군을 격퇴하였던 바와 같이 이번에도 국제적 공농조치로 침략자를 북한영외로 구축하는 것만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평화에 대한 위협

과 분쟁의 요인을 발본적으로 제거하고 또한 UN결의에 따라 한국
통일을 완수하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6. 수복시에 요망되는 통일의교조치

(1) 대 UN

북괴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본격적 침공은 제 2의 한국전쟁을 구성하는 것이며 이로써 1953년 7월 27일 조인된 한국휴전협정은 무효화되었다. 이에 대한민국으로서는 한국전쟁전후를 통해 국제연합이 취한 일련의 조치와 참전 16개국의 활농을 선례삼아 침략의 격퇴, 종전, 한국통일의 완수라는 제단계에 걸쳐 일차적으로 국제연합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제반 외교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

① 대한민국국회의 이름으로 북괴군의 계획적 대규모 침범의 사실을 즉각 UNCURK와 UN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고 한반도와 남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국제연합에 호소한다. 이와 동일한 호소를 미국 정부 및 기타 맹방에 대해서도 행한다.

② 이 호소를 받고 UN 사무총장이나 미국 또는 그밖의 맹방의 요구로 안전보장이사회를 즉시 소집한다. 동이사회는 북괴군의 평화과과행위를 지적하고 북괴가 그 침범행위를 중지하고 그 군대를 휴전선북방으로 철수시킬 것과 UN 회원국이 UN에 원조를 제공하고 북괴에 대하여는 원조를 주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미국 또는 그밖의 국가가 제출한 결의안을 채택한다.

③ 북괴는 이 결의안을 무시하고 침략행위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럴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는 북괴 그간의 전쟁준비 및 도발사실을 들어 그의 침략성을 폭로규탄하고 UN과 맹방들이 침략격퇴를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대한민국을 지원

해 출것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중의에 발표한다.

④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는 다시 회의를 열어 UN 회원국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북괴의 군사적공격을 격퇴시키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을 권고하며 또한 동작전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UN 군통합사령부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그밖에 한국의 일반민간인의 구호와 지원을 위해 사무총장, 경제사회이사회, 기타 UN 산하기관, 전문기관 및 관계민간기관들이 통합사령부가 요구하는 원조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이에 있어서는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치 말도록 사전에 막후교섭을 해둘 것이 간요하다.

⑤ UNCURK 설치에 관한 1950년 10월 7일의 UN 총회결의를 재확인하고 이에 따라 전투구역에 미칠것임을 밝히되 분쟁을 타지역까지 확대시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삼가 할 것과 모든 국가나 정권이 북한괴뢰정권을 원조 지원하거나 그들의 국민이나 군대가 북괴군을 지원하는 것을 삼가 할 것과 한중·한소국경은 불가침이며 국경지대에 있어서의 한국·중공 및 소련의 합법적인 이익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제연합의 정책임을 확인하는 자유우방공동체출의 결의안을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다.

⑥ UN 총회가 UNCURK의 구성과 기능을 가일층 강화한 새 결의안을 채택하고 동위원단을 보강하여 이로 하여금 남북한양역에서 활동하면서 UN 감시하의 남북한중선거실시를 위한 준비를 진행케 한다. 새로 보강된 UNCURK에는 한반도주변의 관계열강과 중립국들을 포함시킨다. 그리고 총회는 통일한국의 정치적독립과 영토보전

그리고 한국 주변의 평화와 안전을 국제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한다.

⑦ 통일한국이 UN에 정식으로 가입하여 국제연합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같이 누린다.

(2) 대자유우방

넬리 자유우방에 대하여 북괴의 침략성을 실증하는 제반사실을 들고 이러한 침략자를 격퇴하기 위한 정강방위의 전열에선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물질적으로 간접지원해 줄것과 이번 기회에 UN결의에 따라 한국통일을 완수하는데 적극적 외교 지원을 해줄 것을 수뇌회담, 성명발표, 사절단파견 등을 통해 호소한다. 대상국으로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맹방인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영국·서독·불란서·호주·캐나다 등에 중점을 두고 그밖에도 UN참전 16개국 월남참전연합국, 아스파크회원국을 중요시한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발동시켜 미국의 군사적 개입과 지원을 확보할 것이 필요하다. UN통합군 편성이 어려운 경우는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을 지원해 주는 국가들의 군대로 연합군을 편성한다. 일본군의 참여에는 신중한 기술적 배려를 가한다. 그리고 미국·일본·호주·영국·비올빈·태국 등을 새로 보장되는 UNCURK 구성국으로서 확보한다.

(3) 대중립주의국가군

북괴의 침략성을 폭로하고 대한민국과 UN회원국간의 침략격퇴공동조치의 정당성을 시야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편을 지원해 주도록 외교차널을 통해 호소한다. 그리고 새로 보장될 UNCURK

안에 몇몇 중도적 및 친서방적 중립주의국가도 포함시키도록 확보한다.

(4) 대공산권

북괴의 도발로 전쟁이 발생하였으므로 제2의 한국전쟁의 책임도 북괴측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아울러 대한민국과 연합국측은 UN헌장정신과 규정 그리고 UN결의에 의거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행위를 격퇴하여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고 아울러 한국통일을 완수키 위하여 행동하고 있음을 천명한다. 그리고 UN총회도 결의하다 시피 전투행위는 한반도의 한국영내에 국한되고 중공영이나 소련영에는 파급되지 않을 것이니 한반도주변의 공산국이나 기타지역의 공산국가들이 전쟁도발자인 북괴를 지원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7. 분헌적 참고자료

△ 참전 16 개국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조인파 배를 같이 하여 「워싱턴」에서 다음과 같은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는데 공동선언 내용은 오늘날 까지 참전 16 개국의 기본입장으로서 전지되어 내려오고 있다.

「우리를 한국전쟁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국제연합회원국들은 휴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유엔」군총사령관의 결정을 지지한다.

우리는 자에 동휴전협정의 제조항을 전폭적으로 또한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확인한다. 우리는 동협정의 상대측도

우리와 같이 동제조항을 신중히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

협정장차의 임무는 용이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국제연합이 확립한 원칙에 따라 통일·독립된 민주한국의 수립을 요구하는 제원칙에 입각하여 한국에서 공평한 해결을 실현시키려는 국제연합의 제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제연합의 제목적과 원칙에 대한 신임과 한국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변함 없는 책임에 대한 인식 및 한국문제해결을 성실하게 추구하려는 우리들의 결의를 재천명한다. 만약 무력공격이 재발하여 국제연합원칙이 다시 도전을 받을 경우에는 우리는 세계평화를 위하여 다시 단결하여 직접적으로 이에 대항할 것임을 확인한다. 이와 같은 휴전협정위반의 결과는 필경 전쟁을 한국전선내에 제한할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것이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 휴전협정이 아시아의 기타 여하한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회복과 보장도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한국전쟁 참전 16 개국이 앞으로 여하한 새로운 군사적 공격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항할 것을 선언하고 만약 공산침략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아마도 전투를 한국국경내에 제한하지를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점이 주목된다.

이어 53년 8월 7일자, 「한국휴전에 관한 국제연합군총사령부의 특별보고」는 한국전쟁의 특수성 및 한국휴전의 본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1950년 6월 27일과 7월 7일의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침략에 대항하여 한국에서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통합사령부의 권한은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입각하여 전투를 종식시키기 위한 군사적휴전을 교섭할 권한도 포함하고 있다. ...」

△ 본 휴전협정교섭에 있어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에 대한 침략을 격퇴하여 동지역에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키려는 국제연합의 한국에서의 군사조치에 관한 기본적목적에 입각하여 행동하였다.

동 협정은 한국군과 유엔군에게 강력한 방위지점을 제공하여 침략재개에 대한 합리적 보장을 주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침략에 대한 국제연합의 신속하고도 지속적인 집단적조치의 결과로서 휴전은 장차 침략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보전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며 전쟁으로 황폐된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달성할 중요제기가 되는 기초위에 성립되었다. ...」

△ 한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에게 경의를 표하는 1953년 8월 28일자 국제연합총회결의는 그 귀결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

다.

「총회는 집단적군사조치에 의하여 무력침략을 격퇴시키기 위한 국제연합의 요청에 의한 첫 노력이 성공적이었는데 만족을 표하며 국제연합헌장에 의한 집단안전보장이 유효하다는 이 입증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표하는 바이다.」

1954년 6월 15일 한국분제토의종결에 있어서 행한 한국분제에 관한 16개국선언은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우리들은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통일된 독립한국을 수립할 목적으로 소집된 제네바회의에 참가하였던 것이다.

우리들은 한국의 통일독립과 자유를 위한 국제연합의 과거의 노력에 일치하는 그리고 우리들이 기본적이라고 믿는 다음의 두개 원칙의 테두리안에서 여러가지 제안과 시사를 행하여 왔었다.

1. 국제연합은 그 헌장하에서 침략을 격퇴하기 위한 집단행동을 취하고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고 또한 한국에 있어서의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도록 알선을 행할 충분하고도 정당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2. 통일된 독립·민주한국을 수립할 목적으로 한국국민의 인구 비례로 선출될 국민의회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감시하에 진정으로 자유로운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 또한 호주·벨기에·캐나다·「콜롬비아」·「에치오피아」·불란서·회랍·「룩셈블그」·화란·「뉴질랜드」·비올벤·태국·토이기·영국 및 미국의 15개국 UN대표가 서명하여 국제연합에 보낸

1954년 11월 11일자 「한국분제에 관한 제네바정치회담보고서내용중

주목할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 있어서의 국제연합의 군사행동에 참가한 국가들은 국제연합헌장의 효력과 한국에서 공산침략을 격퇴하고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국제연합이 취한 집단적행동의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제원칙중에서 첫째 원칙(즉 국제연합이 그 헌장하에 침략을 격퇴하고 한국분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해 추천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이를 고수함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 원칙은 국제연합총회에서 재확인되었으며... 제네바회담의 우리대표단은 국제연합이 침략에 대하여 집단적 군사행동을 취함으로써 한국분제의 평화적해결을 찾기 위한 헌장하의 권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는 공산측의 주장을 거부한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제네바」에서 이문제에 대하여 다른 태도를 취하고 한국에서의 국제연합의 권위와 자격을 부인하는 것을 수락하였다고 하면 이것은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집단안전보장의 원칙을 치명적으로 손상시켰을 것이다.

우리 정부들은 또한 「진정한 자유선거」라는 둘째번 원칙이 한국에서의 국제연합의 목적달성을 위해 불가결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오직 자유선거만이 한국국민이 강제라는 위협없이 자신들의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선거는 한국의 통일을 위한 기본적인 제일단계가 되는 것이다. ...

3개공산대표단의 제안은 한국분제의 해결을 적절하고 공평하게 감시되는 정직하고 자유로운 선거에서 표현될 한국국민의 의사에 맡기기를 거절하는 것을 분명히 시사한 것이었다. 그들은 대한민

국정수와 한국에서 그 군대가 침략을 범하였다고 국제연합이 선언한바 있는 북한괴뢰정권과의 구별을 강조하여 버티려고 기도하였던 것이다. 공산측의 이러한 제안은 그들의 지배를 한국전역에 걸쳐 확장시키거나 또한 최소한도 한국의 분할을 항구화하려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 3개공산대표단들은 또한 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외국군대를 한국으로부터 철수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한국에 평화와 안전을 확립할 사명을 가진 국제연합이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아직도 양단되어 있으며 단일정부도 없음을 뿐더러 그 단일정부를 갖게될 조기적인 희망도 없는 나라를 그대로 둔채 UN군이 이나라에서 철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그 제안은 한국에 있는 침략자의 군대와 그 침략을 격퇴하려는 국제연합의 결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에 와 있는 국제연합군을 동등한 지위에 두어야 한다는 요구와도 같은 것이었다.

제정수는 이 지역에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려는 국제연합의 목적에 아무런 침해도 받지 않고 이것이 될수 있을때 즉시 UN군을 철수시키기로 모두 합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목적이 성취되고 또한 통일한국이 성립된 후에 UN군은 조속히 한국으로 부터 철수를 완료하여야 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

그들은 그들의 제안의 채택이 한국에 관련된 모든 당사국들을 구속하여 그곳에서 평화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그들에게 한국휴전협정 제 62항에 휴전의 유지를 위한 명

확한 제규정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본 휴전협정의 제조항은 상호 수락할 수 있는 수정과 첨가 또는 평화적해결을 위하여 양측이 적절한 정치적 합의를 본 규정에 의하여 명백히 대치되지 않는한 계속 효력을 갖는다. ...

... 6월 15일에 개최된 최종회의에서 우리측 대표단과 한국대표단은 「16개국 선언」을 발표하므로써 우리측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하는 2개의 근본적원칙을 공산측이 거부하는한 동회담에서 한국문제가 이상 고려·검토함이 무익하다는 결론을 우리측이 부득이 본의 아니고 유감스러우나 버리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공산측대표단에게 통고하였다. ...

우리 대표단은 한국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네바」 회담의 실패가 한국의 휴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휴전이 여전히 유효함을 명확히 하였다. ...」

△ UNCURK가 제 25차 UN 총회에 보낸 연례 보고서

북괴가 근년에 이르러 대한민국에 대한 각종 도발행위를 증가해 왔음은 「국제연합한국통일추진위원회」(UNCURK)도 그의 국제연합총회에 대한 연례 보고서 가운데서도 지적되어 왔는데 우리로서는 이러한 권위있는 UN기관의 보고서내용을 들어 자유세계제국은 물론 UN전회원국앞에 북괴가 이미 수년전부터 전쟁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각종 도발행위를 격화시켜 왔으며 이러한 제사실은 이번 제 2의 한국전쟁의 도발책임이 북괴측에게 있다는 실증을 두텁게 해주고 있다는 점을 뚜렷이 인식시켜야 한다. 그 한 실례로서

국제연합한국통일수용위원단이 1970년 8월 13일부로 국제연합제 25차 총회회부를 위해 「우·탄트」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한 1969년 9월 7일부터 1970년 8월 13일까지의 한국사태에 관한 보고서(A 8026) 내용중 한국안보문제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 3 장 이지역 안보문제의 총관

A. 총론 (생략)

B. 대한민국의 안보문제

1. 개요

22. 국제연합군사령부가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휴전협정을 위반하여 군사경계선남방의 비무장지대에 침범해온 사건과 대한민국내부에 침투해온 사건은 본보고서 수록기간중 계속 발생해오고 있으나 종전에 비해 그 발생수가 훨씬 감소되고 있다. (누포 참조) 하지만 이들의 사건 형태는 다양화되어 오고 있다.

<우표> 비무장지대 및 대한민국내에서의 사건 발생수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7월25 일까지
비무장지대 군사경계선남방에서발생한중요한사건	42	37	445	486	87	20
대한민국내부에서발생한 중요한 사건	17	13	121	143	24	15
비무장지대내에서의 사격교환	23	19	122	236	55	12
대한민국안에서의 사격교환	6	11	96	120	22	14
대한민국안에서 살해된 북괴인	4	18	228	321	55	29
대한민국안에서 체포된 북괴인	51	21	57	13	6	1
대한민국안에서 살해된 UN군장병	21	35	131	162	15	2
대한민국안에서 부상입은 UN군장병	6	29	294	294	44	7
대한민국안에서살해된대한민국경찰관및민간인	19	4	22	35	19	1
대한민국안에서 부상입은 대한민국의경찰관및민간인	13	5	53	16	17	13

<출처> 국제연합군사령부

23. 생략

24. 생략

2. 비무장지대내에서의 휴전협정위반사건

25. 국제연합군사령부가 본위원단에게 제공한 정보내용중에서 이들 사건의 일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 1969년 10월 12일 2명의 북괴인이 침범
- (2) 1969년 10월 14일 3명의 북괴무장침범자가 군사경계선 동남방에서 UN군순찰대를 공격
- (3) 1969년 10월 18일 약간명의 북괴무장간첩이 UN군사령부 비무

장지대 용차량을 기습

- (4) 1969년 10월 18일 2명의 북괴무장간첩이 임진강 근방까지 침입
- (5) 1970년 3월 13일 2명의 북괴무장침투자가 군사경계선 남방까지 침입
- (6) 1970년 4월 8일 3명의 북괴무장간첩이 문산근방까지 침입
- (7) 1970년 4월 30일 3명의 북괴무장간첩이 군사경계선 남방까지 침입
- (8) 1970년 6월 14일 3명의 북괴인침범자가 서부비무장지대 군사경계선 남방에 출현
- (9) 1970년 6월 15일 3명의 북괴무장간첩이 문산동남방지역에 침입

3. 휴전협정을 위반한 해로침입

26. 이 기간중 북괴의 간첩침투의 중점이 비무장지대로 부터 대한민국의 연안지역으로 옮겨졌다는 징후가 있었다. 그리고 본위원회는 북괴간첩들이 전보다더 잘 훈련되고 있고 보다 성능높은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에 접하였다.

27. 국제연합군사령부 및 대한민국정부가 본위원회에 제공해준 정보에 의거하여 북괴의 해로침투중의 일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1969년 9월 23일 북괴간첩선이 임자도근방에서 북괴간첩을 대한민국의 연안지역에 침투시키려 기도
- (2) 1969년 9월 20일 북괴간첩이 서해안 오식도에 침투
- (3) 1969년 10월 14일 적어도 20명의 간첩을 실은 북괴의 중무

장간첩선이 전남 서쪽산도 동남방에서 대한민국해군함정과 교전끝에 격침되었다.

(4) 1970년 3월 13일 적어도 3명의 북괴무장침투자가 사용하였던 것으로 믿어지는 1척의 쾌속정이 경북염덕 해안지역에서 발견되었다.

(5) 1970년 4월 4일 약 15명이 탄 50톤급의 북괴간첩선을 군산항 서북방 60해리수역에서 대한민국해군구축함이 격침.

(6) 1970년 5월 3일 3명의 북괴침투자를 태운 북괴소정을 안면도근방에서 저지

(7) 1970년 6월 28일 6명의 북괴간첩을 태운 북괴간첩정을 인천항밖 용흥도근방에서 나포

(8) 1970년 7월 28일 강원도속초근방의 동해안에 나타난 60톤급 북괴선정을 한국군이 격침]

국제연합한국통일추진위원회는 UN총회에 보내는 연례보고서에서 한국통일문제에 대한 대한민국과 북괴의 접근방식 및 자세를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관찰·평가해 왔다. 동 보고서는 대한민국정부가 UN통한원칙에 충실히 평화적으로 통일과업을 달성해 온데 반하여 북괴는 한국문제를 다룰 국제연합의 권위와 권능을 일관해서 부인하면서 무력통일을 준비해 오고 있음을 지적해 오고 있다. 북괴의 도발로 제2의 한국전쟁이 발생한 이마당에 있어서 그 책임이 북괴에게 있다는 실증자료로서도 북괴의 무력통일에의 저의를 들어 낸 「언커크」 보고서내용을 인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1970년의 제25차 UN총회에 제출된 「언커크」 보고서(A/8026)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제 2 장 통일문제

7. 생략

8. 통일문제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의 입장은 그가 1969년 10월 10일 주로 사무총장앞에 보낸 각서(A/C.1/985)안에 진술되고 있다.

이 각서에 의하면 「첫째로 대한민국은 평화적수단으로 국토의 통일을 추구한다. 둘째로 대한민국은 통일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토착인구비례로 대의원을 선출할 자유선거를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셋째로 대한민국은 동선거의 진정한 자유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이 전국선거를 감시 및 관찰하여야 하고 또한 한국에서의 침략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지역에서의 항구평화와 안전을 위한 제반조건이 조성될때까지 UN군이 잔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 반복해서 천명되고 있다.

9. 통일문제의 여러 양상에 관한 다수의 성명이 대한민국의 지도자 및 공무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1970년 1월 9일의 기자단회견에서 박정희대통령은 자기나라가 「1970년대를 통해 국토통일문제에 적극적접근방식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또한 자기나라가 「평화적이던 또는 그렇지 않던 어떠한 종류의 통일접근방식에도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모든 면에서 북한에 대해 절대적 우월을 유지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10. 대통령은 1970년 5월 11일 본위원단구성원들을 접견하였다.

이때 한국통일문제에 언급하여 그는 대한민국정부의 평화정책을 재확인하고 「나의 정부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11. 생략

12. 한편 통일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태도는 그가 국제연합사무총장 및 총회의장앞으로 보낸 1969년 10월 8일부 각서 (A/C.1/987) 가운데 약술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한국을 통일할 유일의 방도는 「어하한 의세의 간섭도 없이 한국인 자신이 독자적 입장에서 민주적방식으로 평화적수단에 의하는 것」이라고 진술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문제해결에 있어서의 국제연합의 역할을 거부하는 종전의 입장을 유지하여 국제연합한국통일추진위원단의 해체와 대한민국으로 부터의 UN군의 철수를 거듭 요구하였다.

13. 북한의 공식신문보도에 의하면 김일성은 1969년 7월에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고 한다. 「조선의 통일과 민족해방이라는 조선민민의 대의의 달성은 결국 따져보면 ① 북조선의 사회주의세력 ② 남조선의 혁명세력 및 ③ 국제혁명세력이라는 세가지 혁명세력을 구축하는데 달려있다. 남북조선에서 혁명세력을 강화 발전시키는데 노력함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국제혁명운동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14. 나아가서 1970년 4월 5일부터 7일까지의 중공 주은래수상의 평양방문종료시에 발표된 공동성명은 한국통일문제에 언급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중략) 중공측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군을 남조선으로 부터 철수케 한후 의세간섭없이 독자적방법으로 조선인 자신이 국토통일을 달성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올바른

국토통일로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15. 1970년 6월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김일성을 대신하여 재뉴욕시 조선민주주의 통일건설위원장인 고병철 씨에게 보낸 그의 1970년 3월 1일부 서한에 대한 회한가운데서 통일문제에 대한 동정부의 정책을 다시 한번 약술하였다. 동서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조선통일을 위해 기왕에 취해온 정책 및 조치를 개선하고 나서 이에 관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하였다.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으로 부터 철수케 하고 북조선과 남조선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조선의 군사력을 극적으로 감축시킬 것.

민주적기반위에 남북자유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통일중앙정부를 수립할 것.

과도조치로서 완전통일에 앞서 남북조선연합을 강제편성하고 필요하다면 현존하는 남북조선의 상이된 사회계도당 오늘날의 양태그대로 잔존시킬 것.

남북간에 통상 및 경제협력을 하며 학술, 문화, 예술 및 운동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실현시킬 것.

남북간에 우편물교환과 사적방문을 실시한다.」(후략)

16. 이 서한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의 반응은 1970년 6월 15일부 외무부각서에서 표명되었다. 통각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론바 평화방식에는 하등 새로운 것이 없다. ... 대한민국정부는 국제연합이 한국에서 그의 사명을 달성하는데 전적으로 협조해

오고 있으며, 평화적국토통일의 선행조건의 하나가 되는바 한반도에
서의 긴장의 완화와 평화상태의 조성을 위해 보복대신 동포로서의
관용과 인내로써 북괴의 각종도발행위에 대해 왔다. ... 만약에 북
한공산주의자들이 진실로 진정한 평화적재통일을 갈구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진실성을 말로써가 아니라 한반도전역을 공산화하려는 제책
을 당장에 방지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침투 및 도발행위를 지체없
이 정지하고 또한 한국통일에 관한 UN결의를 존중함으로써 행동으
로 실증하여야 한다. 그들은 평화통일에 관하여 선전전을 전개하
기 보다는 그들의 성실성에 대한 증거로써 관계된 UN제결의에
따라 국제연합한국통일추진위원단 구성국의 입북을 허용해야 한다.

...」

17. 생략